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재정경제기획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27일, 정태호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2.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6.4.29.) 상정, 심사, 의결(수정)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4.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태호의원)

현행법은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 재난 등 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로 지정되었으나 감염병 확산의 완화로 수요량이 급감하여 정부 비축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정부의 저가 판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적어 마스크의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상 위기에의 대응 등 공익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 안 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수정 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비축물자의 무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에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상 위기에의 대응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제6항 중 “공익적 목적”을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상 위기에의 대응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사용기간, 보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사용기간, 보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u>